

■ 핵심진단평가 2020년 7월 발행본 [1 차+ 2차] 개정 정오표 ▶ 2021년 8월

페이지	줄수 및 문항번호	정·오	내 용
2	19번 문제	오	19.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이 총톤수를 측정할 때는 일반배치도만 첨부하면 된다..... ()
		정	19. 한국선박은 선수 양현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19번 문제	오	(O)
		정	(X)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29번 표 내용	오	•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정	•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24	11번 보기①	오	1만5 천톤
		정	1만톤
25	6번	오	(1만5천톤)
		정	(1만톤)
26	9번 문제 교체	오	문제 교체
		정	9.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 또는 ()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으로 사망하여 (), 기항 예정 항만에서 ()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7	9번 정답 교체	오	정답 교체
		정	9. ■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법 제17조> ▣ 수장권은 삭제됨 (2021.6.15. 개정 · 시행)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46번 문제교체	오	문제 삭제 후 교체
		정	46. 선원법상 항해 중 선박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선장 취하여야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다음 기항 예정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을 기항 항의 국가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5	46번 정답 교체	오	정답 교체
		정	46. ① ■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법 제17조> ▣ (2021.6.15. 개정 · 시행)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4	26번 수정	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 나. 2차 위반: ()
		정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개정·시행 2021. 4. 13.>
45	26번 정답 수정	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정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면허취소)  <개정·시행 2021. 4. 13.>
48	27번 부분삭제	오	27. 선박안전관리증서는 ()개월의 범위에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27.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	30번 용어수정	오	30. 좁은수로에서 오른쪽으로 추월시는 (), 왼쪽으로 추월시는 ()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피추월선의 동의신호는 ()이다.
		정	30. 좁은수로에서 우현 앞지르기는 (), 좌현 앞지르기는 ()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동의신호는 ()이다.
49	27번 부분삭제	오	~ 각각 한 차례만 ~
		정	~ 각각 한 차례만 ~ ▶ 삭제

60	1번 마.	오	마.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정	마. 해양환경(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3번 4번 9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1	1번 마.	오	마.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정	마. 해양환경(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3번 4번 9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2	4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2	5번 보기①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4	10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6	14번 보기①②④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15번 보기①②③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16번 보기①②③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7	16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68	18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84	10번	오	10. 기름기록부 비치 제외 선박
		정	10. 기름기록부 비치 제외 선박 (유조선 제외)
85	10번	오	10. 기름기록부 비치 제외 선박
		정	10. 기름기록부 비치 제외 선박 (유조선 제외)
86	24번	오	24. 해양환경관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는 것으로는 () () ()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 ()이 있다
		정	24.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관리업인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87	24번	오	24. 해양환경관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는 것으로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이 있다.
		정	24.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관리업인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20. 12. 4. 개정시행

88	31번 보기①	오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
		정	①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한국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89	31번	오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정	한국선박은 모든 해역에 적용된다.
94	49번	오	49.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	49. 다음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상 해양폐기물배출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95	49번	오	49. 정답 ④ 1. 폐기물해양배출업 2. 해양오염방제업 3. 유창청소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정	49. 정답 ④ ■ 해양환경관리업(2가지) ▶ 「해양환경관리법」 ▶ 2020. 12. 4. 시행 • 해양오염방제업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 • 유창청소업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 ■ 해양폐기물관리업(3가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폐기물 해양배출업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 해양폐기물 수거업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97

표

오	표 수정																					
정	■ 해양환경관리업(2가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 2020. 12. 4. 시행 <table><tr><th colspan="2">종 류</th><th>등 록</th></tr><tr><td>• 해양오염방제업</td><td>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td><td>▶ 해양경찰청장</td></tr><tr><td>• 유창청소업</td><td>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td><td>▶ 해양경찰청장</td></tr></table> ■ 해양폐기물관리업(3가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 2020. 12. 4. 시행 <table><tr><th colspan="2">종 류</th><th>등 록</th></tr><tr><td>• 폐기물 해양배출업</td><td>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td><td>▶ 해양수산부장관</td></tr><tr><td>• 해양폐기물 수거업</td><td>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td><td>▶ 해양수산부장관</td></tr><tr><td>•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td><td>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td><td>▶ 해양수산부장관</td></tr></table>	종 류		등 록	•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해양경찰청장	•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경찰청장	종 류		등 록	• 폐기물 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폐기물 수거업	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종 류		등 록																			
•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해양경찰청장																				
•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경찰청장																				
종 류		등 록																				
• 폐기물 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폐기물 수거업	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 황산함유량의 기준 <법 제44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 0.5퍼센트(무게 퍼센트)
98	7번	오	7.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임기는 ()년이다.
		정	7.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 및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임기는 ()년이다.
99	7번 정답	오	개정 됨
		정	7.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 및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 (2021.4.13. 개정 2121.10.14.시행)
110	3번 수정	오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정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 및 ()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111	4번	오	4.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4.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일에서 7일로 개정됨 2020.12.23. <시행규칙 제7조>
112	7번 문제 교체	오	7번 문제 교체
		정	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정의한 연안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②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③ 갯벌·갯바위·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④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좌초사고
113	7번 정답 교체	오	정답 교체
		정	7. 정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 선박의 좌초사고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 연안사고가 아니다.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156	11번 추가	오	문제추가
		정	11.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에 해야 하며, 위치통지의 횟수는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 2.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 3.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

157	6번 추가	오	추가
		정	■ 적용제외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시행령 제3조> 1.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157	11.추가	오	추가
		정	11.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하며, 위치통지의 횟수는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3회) 2.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2회) 3.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1회)
158	157 다음페이지에 158 페이지로 추가	정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모든 어선 출항 금지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 미만 어선 출항 금지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3. 폭풍해일주의보 폭풍해일경보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 **출어등록** <법 제12조>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법 제17조>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시행령 제9조>

1. 백령도 2. 대청도 3. 소청도 4. 연평도 5. 강화도

■ **선장의 의무** <법 제22조>

① 어선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 긴급사태에 관한 정보 청취 <시행규칙 제11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정보를 청취해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159	158 다음 페이지에 159 페이지로 추가	정	■ 정선 등 <법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선신호 방법 등 <시행규칙 제12조> ①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3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2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 1일 1회(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 매 12시간 간격(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 매 4시간 간격(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166	7번 8번	오	해양수산부장관
		정	관리청
167	2번	오	2. <u>항만운송사업</u> 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	2. <u>항만운송사업</u> 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번	오	3.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	3.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였을 때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6번	오	6. <u>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u>
		정	6. <u>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u>
	7번	오	7.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정	7.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8번	오	8. <u>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정	8. <u>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